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에서 소나무류 조림의 허용기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소나무류 조림을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용대상 조림의 범위」를 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재선충병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소나무류의 조림을 허용하는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의 허용기준”을 시달하여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분재 포함)에 대하여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치 및 확인할 사항”에 따라 미감염이나 생산을 확인하신 후에 소나무류의 이동과 조림이 허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의 허용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소나무류 조림을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용대상 조림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기관에서 재선충병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소나무류의 조림을 허용하고자 함.

1. 허용대상 조림의 범위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조림을 하는 경우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경관 목적으로 조림을 하는 경우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조림을 하는 경우

2.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치·확인할 사항

가. 조림 대상목 생산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의 경우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조경수·분재 이외는 일체의 반출을 금지)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반출금지구역의 관할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 검경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
 - 검경할 때의 시료채취 방법은 「참고 2」의 방법에 따라 샘플링 검사(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검경 이후 유효기간은 90일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예방나무주사는 12월~2월에 나무마다 각각 주사하여야 하며,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나. 조림할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사항

-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경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경우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다. 기타 확인할 사항

- 소나무류를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 이식하기 위하여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일시적”으로

소나무류를 심는 행위는 조림에 해당되지 않으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참고 1〉

관련 법령 조문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참고 2〉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

□ 대상목 선정기준

- 대상목이 10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 이상을 선정
- 대상목이 10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

□ 시료채취 방법

- 시료 채취시 조경수의 상품가치를 고려하여 상단·중간·하단의 가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채취
 - ※ 재선충은 굵은 나무줄기의 밑부분보다는 줄기 윗부분이나 작은 가지에 많으므로 가급적 윗부분에서 시료를 채취

